

1998. 5. 2

수신: 충주시의회의장

제목: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1998. 4. 30 일 (의안번호: 제546호) 충주시장이 발의한 충주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충주시의회규칙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 : 충 주 시



철 회 요 구 사 유

당 초 안	의 회 수 정 안
<p>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시장은 시의회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수 있다</p> <p>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관계공무원등 시장이 위촉한다.</p> <p>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환경업무 주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p> <p>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환경업무 주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p>

□ 철회사유

-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5조제2항 환경위원회의 위원을 시 관계공무원등으로 명시한 것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환경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의회 수정안대로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환경위원회 설치의 본래목적에 어긋남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전문가와, 도시, 교통, 산림, 수자원분야등의 전문가를 총망라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의회 수정안을 수용하는데 문제부분이 있고,
-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5조제3항중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은 환경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사업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또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가 구성한 자문기관이므로 환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에서 본안을 수정 하였으므로 철회하여 관계조문을 충주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후 다음 회기에 의안 제출코자합니다..